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98 발의연월일: 2025. 1. 9.

발 의 자:노종면·정동영·김 현

이훈기 · 김문수 · 조계원

이해민 · 최민희 · 한민수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의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가 이른바 '정치심의'로 변질되어, 오히려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보여준 사례로 보고, 보도·논평 심의기준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는 인권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국제적 우의 증진 등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보도·논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보도·논평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는 제2항 각 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		
	승)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②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報道・論評의 공정성・공공	<u><삭 제></u>		
성에 관한 사항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보도		
	•논평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		
	<u>어야 한다. 단, 보도·논평을</u>		
	대상으로 하는 심의는 제2항		
	각 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는 제외한다)에 따른 심의규정		
	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u>심의하여야 한다.</u>		
<u>③</u> ~ <u>⑥</u> (생 략)	<u>④</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